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

본인확인	담당	책임자

■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

하나은행 귀중
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제	
신청인	성명		휴대전화번호	010 - -
	주민등록번호	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내역 통지 동의 ※ 미동의시 서비스 신청 불가
대리인 정보	성명		신청인과의 관계	
	생년월일		휴대전화번호	010 - -
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의대리인 신청시에도 신청내역에 대한 안내는 신청인(본인)에게 통지됩니다.			

- 본 서비스 신청 즉시 신청인 명의의 전 금융기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차단됩니다.
- 적용 대상은 수시입출식 계좌(외화계좌 포함)이고, 개인사업자용 계좌에도 적용됩니다.
- 신청내역 통지 동의 시 귀 행은 연 2회(상·하반기) 안심차단 신청 상태를 통지합니다.
- ※ 단, 귀 행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모두 종료된 경우(개인정보 분리보관 조치 등) 귀 행은 안심차단 신청 상태를 통지하지 않습니다. 신청내역 통지를 계속 희망하실 경우 거래 중인 타 금융기관에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차단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임의대리인의 서비스 신청시에는 신청한 대리인 및 본인만 서비스 해제가 가능합니다.
- 상기 기재된 신청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귀 행에 변경내역을 알려야합니다.
변경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알림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귀 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귀 행은 상기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, 진위성,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이 없으며 회사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귀 행은 천재지변, 파업, 법령의 변경, 관계기관 등의 명령이나 지침 또는 당사자의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안심차단 신청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(<http://credit4u.or.kr>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하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정보*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금융기관 등에 공유됩니다. 안심차단정보는 금융기관과의 신규 금융거래 진행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만 활용됩니다.

*고유식별정보, 안심차단 신청 상태, 신청일자 등

본인이 가입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, 상기와 같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